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4. 3.
4. 회부일자 : 2020. 4. 6.

II. 제안이유

-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서울교육참여 유도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는 ‘인터넷 매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2. 조례의 목적을 홈페이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것에서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함(안 제1조)
3.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른 정의들도 개정에 맞도록 정비함. (안 제2조)
4. 운영 활성화 대상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매체로 확대함 (안 제1조, 안 제3조 ~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5. 미사용 용어,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함.(안 제1조 ~ 제10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조례안 [별첨2] 참고)
3. 기 타
 -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 나. 입법예고(2019. 9. 16. ~ 10. 6.) : 의견 없음
 -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3]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4]
 - 바. 공직선거법 질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32호로 제출되어 202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활용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홈페이지 외에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 외에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브런치, 네이버포스트, 각종 어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정책 등을 홍보·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환경의 다변화에 발맞춰 전반적인 인터넷 매체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바, 급변하는 IT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개정조문 체계

- 동 개정조례안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제5조에서 인터넷 매체의 운영과 정보 관리 그리고

게시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교육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참여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와 사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책메일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의 정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의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조문별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SNS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홈페이지’ 이외에 SNS와 앱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같은 조 제6조의 ‘정책고객’의 정의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SNS 활용이 보편화되어 교육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안 제9조의 정책메일서비스의 대상을 별도의 ‘정책고객’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인터넷 환경의 다변화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의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인터넷 매체’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

기 등의 맞춤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교육청은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라 마일리지 제공 및 사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정책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꿀박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현재까지 마일리지 부여 내역]

마일리지 제도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교육청: 0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건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http://enews.sen.go.kr>)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력

- (2011.05) 마일리지 서비스 시행
- (2012.05) 마일리지 제도 개선(종류 및 적립기준 조정)
- (2016.10.) 마일리지 제도 폐지
- 2016년도 이전 마일리지 사용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문화상품권	4명	4명	5명	8명	1명	22명
문자발송	-	-	2명	1명	2명	5명

- 전체회원 중 마일리지 사용자 비율은 0.1%로 서울교육소식 홈페이지 특성상 참여를 통한 마일리지 이용 활성화 어려워 제도 폐지함.

꿀박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이력

- (학생) 학기당 1000포인트 도달 시 "교육재능나눔확인증" 수여(이후 포인트 리셋)
- (교사지원단) 500포인트 도달 시 매월 5만원 수당 지급(이후 포인트 리셋)

예산 (단위: 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교사지원단 수당지급	16,420	15,858	10,858

따라서 교육청은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마일리지 이용실태 분석 및 현행 제도 운영의 효과성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9조 정책메일서비스의 경우 현재 격주로 교직원을 제외한¹⁾ 일반시민에게 이메일로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하이퍼링크를 통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어 SNS 플랫폼과 같이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²⁾

[표] 인터넷 매체 운영 현황

인터넷 매체		연간 이용자현황 (단위: 명)			
종류	접근주소	운영기준	2018	2019	2020
모바일앱	앱 명칭: 서울교육뉴스	다운로드수	2,863	2,148	2,114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	방문자수(누적)	6,356,622	8,359,701	9,219,396
포스트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511714	방문자수(누적)	2,675,968	3,270,881	3,432,452
브런치	https://brunch.co.kr/@seouledu	방문자수(누적)	373,867	746,490	797,304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seouleducation	구독자수	369,711	406,067	405,27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education	구독자수	39,910	52,296	51,755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lxmgyxl	구독자수	8,051	10,188	9,923
트위터	https://twitter.com/good_sen	구독자수	14,579	13,530	13,422
뉴스레터 ³⁾	http://enews.sen.go.kr/use/mailemail.do	1회당 일반인	12,532 (51회)	13,341 (23회)	14,664 (7회)
		1회당 교직원	7,583 (51회)	109,550 (22회)	교직원 전체 (8회)

1) 교직원 대상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교육정책 및 교육감 전달 사항 위주로 선정하여 내부메일을 통해 발송 하였으나, 2020년 K-에듀파인 개편에 따른 시스템 문제로 공문계시로 한시적 대체 중임.
 2) 「뉴스레터-서울교육 유튜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 뉴스레터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홍보부족’과 ‘구성과 내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3) 뉴스레터 발송 인원은 2018~2019년까지는 연도 말 기준이며 2020년은 4월 8일 기준임.

따라서 정책메일서비스 제도의 운영확대를 통한 교육정보 제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